

디자인심사동향

D e s i g n
E x a m i n a t i o n

R e p o r t | MARCH 2019
| Vol. 11 ('19.3)

- | 재미있는 디자인권 이야기
- | 심사 동향_디자인 공동심사 시범실시
- | 2019년도 디자인 검색DB 재분류 사업 추진
- | 스마트 디자인심사시스템 설명회 및 시연회 개최
- | 제110차 디자인아카데미 개최
- | 디자인 현장간담회 개최
- | 공지 사항_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발간
- | 해외 동향_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한 일본 의정법 개정 동향
- | 제 41차 WIPO 상표디자인상설위원회 개최

디자인강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에는 농담처럼 가벼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간혹 어린이들이 만우절날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언론보도하기도 한다. 그만큼 만우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유엔(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그 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였다.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해 오다가,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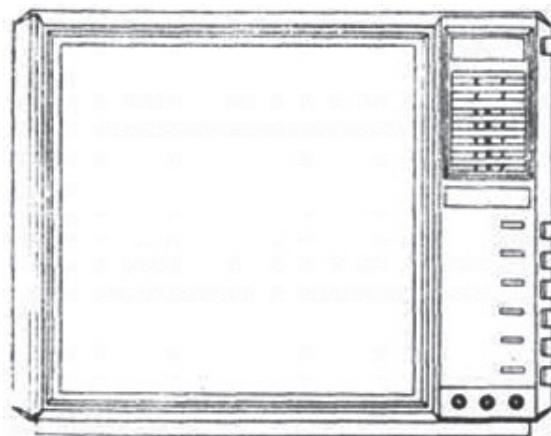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 부른다. 성별, 나이, 장애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물 등의 디자인을 말하는데, 직역하면 ‘보편적 설계’ 정도의 의미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최근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수단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된다거나, 휠체어 슬로프가 설치된 버스, 대중교통수단에 키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디자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청에 출원된 디자인 중에서,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약 1,300여건 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61년 의장법(현재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만에 세계 2위의 디자인 출원 국가로 올라섰고, 경제대국 일본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만을 위해 제작된 디자인 숫자가 1,300여건이라는 점은 아쉬운 감이 남는다.

한해 우리나라 디자인출원이 6만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간 22건 정도에 출원이 저조한 편이다. 물론, 장애인용이라고 밝히지 않고 출원된 디자인이 더 있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물품이 일반인용과 장애인용으로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물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특히 청에 등록된 디자인 중, 처음으로 장애인 물품이 검색되는 것은 1981년에 주식회사 '엘지이아이'에서 출원한 '언어장애인용 학습기'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용 핸드 콘트롤러, 퍼스널 컴퓨터 콘트롤러, 휠체어 등의 디자인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1980년대까지는 거의 출원이 없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 당시부터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 장애인 복지법이 강화되어 장애인을 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된 때도 이즈음이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해서라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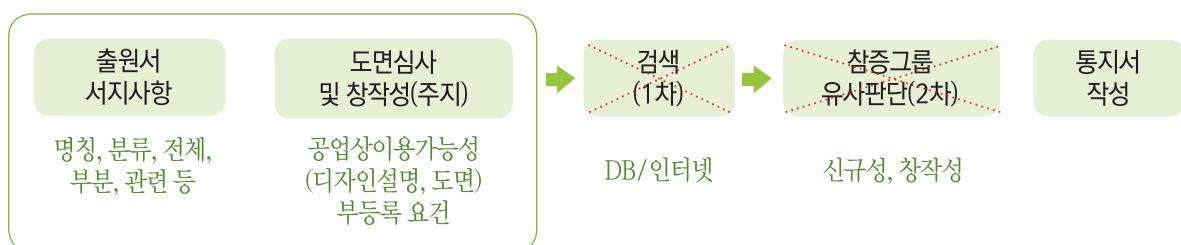
언어장애인용 학습기(30-0037851)



디자인 공동심사 시범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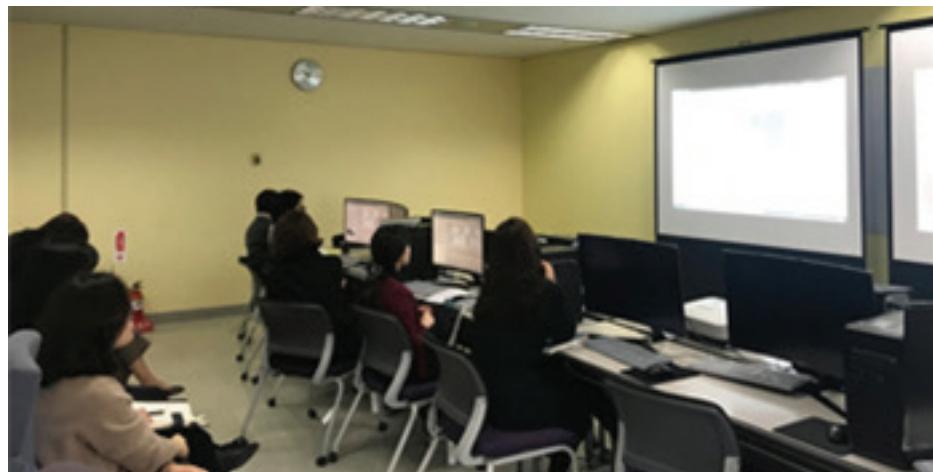
특허청은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1개월 간, 주 4회, 일 1시간씩 디자인 공동심사를 시범 실시하였다. 공동심사란, 기존 1인 심사관이 1디자인을 심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다수의 심사관이 1디자인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심사관은 소속과 심사경력, 담당 물품 등을 고려하여 총 6인으로 구성되었고, 심사 대상은 심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심사건에 한정되었다.

〈 디자인 일부심사 공동심사 시범실시 범위 〉



시범실시 결과, 여러 명의 디자인심사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심사는 심사관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정확한 규정 및 동일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 심사관별 판단의 편차를 줄이고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관간의 견해를 대조 검토(Cross-Check)할 수 있어 심사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공동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 심사관들과 공유하여, 심사일관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허청은 내부적으로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 심사인력과 심사대상 건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향후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 디자인 일부심사 공동심사 시범실시 현장 사진 〉

2019년도 디자인 검색DB 재분류 사업 추진

특허청은 2019년 디자인 검색DB 재분류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한국분류체계로 정리되어 있는 디자인 검색DB를 새롭게 개발된 신(新)분류체계에 맞춰서 재분류하는 사업이다. 신디자인분류체계는 현재 로카르노 국제분류의 국제적 호환성과 한국분류체계의 검색효율성을 통합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선행디자인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디자인 물품 분류 체계이다. 디자인검색 DB재분류사업은 2021년 신디자인분류체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특허청은 2016년 新분류체계를 개발하였고, 2017년 분류정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디자인 검색DB 재분류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가 2차 년도 사업이다.

스마트 디자인심사시스템 설명회 및 시연회 개최

특허청은 2019년 7월부터 스마트 디자인심사시스템의 전면시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심사관, 조사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설명회(2월)와 시연회(3월)를 개최하였다. 스마트 디자인심사시스템은 특허청 내부에서 심사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한글’ 프로그램 기반의 심사메모기능을 ‘웹’(Web)기반으로 전환하고, 심사오류 방지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기능개선이 이루어진 심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심사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7월까지 오류 수정, 심사관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개선, 미비한 부분 점검 등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제110차 디자인아카데미 개최

특허청은 3월 20일, 제110차 디자인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디자인보호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자인아카데미는 디자인심사관들의 심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격월로 개최하는 심사관 회의로, 디자인보호 쟁점을 논의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신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자리이다. 이번 주제는 디자인보호법위 확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 디자인보호법 체계는 디자인이 반드시 물품의 외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신기술 디자인에 대해 보호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해외 자료 수집 및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디자인 현장간담회 개최

특허청 디자인심사과는 지난 3월 14일, (주)LG생활건강 디자이너와의 간담회를 통해 포장디자인의 창작과정·개발프로세스 등 창작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이 생각하는 ‘창작성’의 법적 정의와 일선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창작성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디자이너가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자인권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리뉴얼 제품을 디자인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본인의 디자인을 변형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 기준, 상품 재질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과 창작성 판단, 디자이너의 창작 의도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한 기간인 1년을 더 길게 연장하는 것과, 디자인의 재질을 보호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다른 물품에서의 창작성 판단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위해 보석, 가구 업종 등과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 * 디자인제도관련 간담회를 희망하는 업계는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종균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eideger@korea.kr)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발간

특허청에서는 개인출원인들의 민원을 감소하고, 도면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나홀로 출원인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에는 출원인이 자주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도(線圖),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의 표현방법을 실제 등록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디자인도면의 작성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사례나 그림이 전혀 없어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였다.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등에서도 도면과 관련된 교육자료나 설명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도면작성의 일반기준을 정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곁들여 설명한 자료이다. 출원인은 책자를 보며 출원서를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제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다만, 글자체도면 작성방법은 금년 내 개정될 예정으로 수록하지 않았다.



디자인 디자인출원에서 디자인도면은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을 통해 대리인 없이 나홀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은 3월말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및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E-book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온라인등록 고객에서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01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한 일본 의장법 개정 동향

1. 화상디자인 보호 확대

지금까지 일본은 권리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의장(디자인)과 물품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일본 의장법에 화상디자인(GUI 등)을 부분디자인으로 도입함에 따라, ① 물품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하는 화상(예: 손목시계의 시각 표시)으로 물품에 기록되어 있는 표시화상, ②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조작을 하는 조작화상(예 : 스크린워치 기능을 내재하는 손목시계의 시간계측 표시)이 보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③ 물품에 사후적으로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화상에 까지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최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물품이 아닌 벽이나 인체 등에 표시되는 GUI가 널리 사용되는 등 그 투영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2019년 2월 개최된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에서는 조작화상이나 표시화상에 관해서는 화상이 물품(또는 물품과 일체로 사용되는 물품)에 기록·표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장법 보호대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벽지 등의 장식적인 화상이나, 영화·게임 등의 컨텐츠 화상 등은 화상이 관련된 기기 등의 기능과 관계없이 그 기기 등의 부가가치를 직접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화상디자인의 실시행위에 관해서는 현행 의장법의 물품의 실시행위나 특허법의 프로그램 등의 발명에 관한 실시행위를 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의장 등록된 화상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경우, 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행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에 각각 실시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된 서버를 관리하는 행위는 실시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보았다.



2. 공간디자인(실내 인테리어) 보호 확대

최근 일본에서 독창적인 실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서비스 등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매장의 인테리어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상의 보호도 가능하지만, 저작권은 주로 예술적인 건축물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만일,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주지성이나 저명성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 구축을 위한 만들어진 독창적인 공간디자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지성이나 저명성을 획득하기 전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동안 건축물은 부동산이므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의장법 개정안에서 디자인 보호대상을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인 ‘건축물’까지 넓혀 보호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다.

02

제 41차 WIPO 상표디자인상설위원회 개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1차 상표·디자인상설위원회(SCT)*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디자인법 조약(DLT: Industrial Design Law Treaty) ② 각국의 GUI·아이콘·글자체 디자인 보호에 관한 설문 ③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1조에 따른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에 관한 각국 현황 ④ 디자인분야 DAS(Digital Access Service)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제사무국은 지난 3월 8일, 이번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각국의 GUI·아이콘·글자체디자인 보호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30여 개국에서 제출한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 설문취합 자료 등 주요 회의 내용과 회의 실황 VOD는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 HomeKnowledge-Meeting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CT :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5